



**제 612호 2024. 6. 13 (목)**

**입법예고**

제2024-2787호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8672
제2024-2795호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8677

**고 시**

제2024-203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4호선 외 4개소, 공공공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38683
제2024-206호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38687

**공 고**

제2024-2754호	공인조례 폐기 공인 .....	38709
-------------	------------------	-------

##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김 해 시 장

###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결손처분의 용어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본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인 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문구 정비
- 나. 법령 개정 관련 조항 정비(안 제13조~제16조 및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제9호서식~제10호서식)

### 4. 입법예고기간 : '24. 6. 13. ~ '24. 7. 3. (20일간)

###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김해시장 (참조:납세과)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 2) 담당부서 : 납세과 지방세체납팀  
(전화: 055-330-3502 팩스: 055-722-1520, 이메일: yth397@korea.kr)
- ※ 팩스 제출 시 사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E-mail, 직접방문 등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조례안 조문	의견제출 내용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김해시장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지방세징수법」 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2023. 1. 1.시행)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문구를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 2. 주요내용

- 법령 개정 관련 조항 정비(안 제13조~제16조 및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제9호서식~제10호서식)
  -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문구 정비
  - 변경내용 : 결손처분→정리보류, 결손처리→시효완성정리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불 임
-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2024. 6월 중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2024. 6월 중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2024. 6월 중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시 접수 의견 :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7월 중

##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를 “법 제106조제1항”으로,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는”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5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략)</p> <p>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u>결손처리</u>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제14조(<u>결손처분</u>) 법 제106조에 따른 <u>결손처분</u>은 별지 제1호서식의 <u>결손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호서식의 <u>결손처분표</u>(갑, 을)에 따른다.</p> <p><u>&lt;신 설&gt;</u></p> <p>제15조(<u>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해당 연도에서 <u>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u>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u>결손처분 취소액</u>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6조(<u>결손처분의 사후관리</u>) <u>결손처분을 한</u>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u>결손처분을 취소</u>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p>	<p>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효완성정리</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u>정리보류</u>)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u>정리보류</u>는 ----- - <u>정리보류결정결의서</u> ----- ----- <u>정리보류표</u> ----- -----</p> <p>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u>시효완성정리</u>는 별지 제1호서식의 <u>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u>시효완성정리표</u>에 따른다.</p> <p>제15조(<u>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 ----- <u>정리보류를</u> ----- ----- ----- <u>정리보류 취소액</u> ----- ----- -----</p> <p>제16조(<u>정리보류의 사후관리</u>) <u>정리보류를 한</u> ----- ----- ----- ----- <u>정리보류를</u> ----- <u>취소</u> ----- -----</p>

##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일부개정 이유

- 도심지 심각한 주차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영유아 동승자까지 이용토록 확대하여 가족배려주차 문화확산으로 저출산 극복 양육환경 조성
-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방안이 없어 위반차량 조치사항 '이동주차 권고'로 변경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김해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용대상 확대 및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
  - 이용대상 확대: 임산부 → 임산부·영유아
-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삭제(현행 제5조 삭제)
- 위반차량 조치사항 '권고'로 변경(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50924) 김해시 분성로 227,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2) 담당부서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 (전화 : 055-330-6932, FAX : 055-722-0830, E-MAIL : [wndud18@korea.kr](mailto:wndud1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6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김해시장

## 1. 제안이유

- 도심지 심각한 주차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영유아 동승자까지 이용토록 확대하여 가족배려주차 문화 확산으로 저출산 극복 양육환경 조성
-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방안이 없어 위반차량 조치사항 '이동 주차 권고'로 변경

##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김해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이용대상 확대 및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
  - 이용대상 확대: 임산부 → 임산부·영유아
-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삭제(현행 제5조 삭제)
- 위반차량 조치사항 '권고'로 변경(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2024. 6.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2024. 6.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2024. 6.
- 입법예고 : 2024. 6. ~ 2024. 6. (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7.

##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임산부가”를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복지 증진”으로 한다.

제2조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4.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임산부나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따로 마련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을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임산부·영유아 가정을”로, “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시설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를 “공공시설에”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을 “가족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임산부가”를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를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산부 자동차”를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로 하며, “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을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를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김해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u>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u>&lt;신 설&gt;</u></p> <p>2. 3. (생 략)</p> <p>4. “<u>임산부 전용주차구역</u>”(이하 “<u>전용주차구역</u>”이라 한다)이란 <u>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u>전용주차구역</u>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u>다중이용시설에 <u>전용주차구역</u>를 설치하도록 권장</u>하여야 한다.</p>	<p><u>김해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u> ----- <u>-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복지 증진-----.</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u></p> <p>2. 3. (현행과 같음)</p> <p>4. “<u>가족배려주차구역</u>”이란 <u>임산부나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따로 마련된 주차구역을 말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임산부·영유아 가정</u> <u>을 -----</u> <u>--가족배려주차구역-----</u> -----.</p> <p>② ----- <u>가족배려주차구역-----</u> -----.</p>

제4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해당 시설 관리자는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 공공시설에서 -----  
-----  
----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

③ ----- 가족배려주차구역  
-----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

<삭 제>

제6조(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 --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  
- 가족배려주차구역 -----  
-----.

제7조(위반차량 조치) -----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  
-----  
--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4호선 외 4개소, 공공공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4호선 외 4개소, 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 김 해 시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김해시 구산동 593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4호선 외 4개소, 공공공지)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시 구산동 공동주택 진입도로공사
-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시설결정			금회시행규모			비고
	연장(m)	폭(m)	면적(㎡)	연장(m)	폭(m)	면적(㎡)	
중로1-24호선	20~26	926	-	3.0~6.5	164	930	1999.03.04.
중로2-63호선	15~18	917	-	0.0~1.2	32	22	2008.01.24.
소로1-83호선	10~16	1,470	-	10~16	280	559	1987.06.27.
소로2-282호선	10	15	-	10	14	151	1987.06.27.
소로2-713호선	10	16	-	10	16	209	2023.06.15.
공공공지	-	-	1,097	-	-	1,097	2023.06.15.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신자신신탁 주식회사 김송규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
- 실시계획인가 신청사유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대책으로 인근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 및 인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공지를 조성하기 위함.
-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중로1-24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위치	지번				주소	성명	
1	구산동	533-1	전	119.0	119.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2	구산동	533-6	대	206.0	142.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3	구산동	533-9	전	231.0	23.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4	구산동	545	대	1,529.0	178.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5	구산동	547-4	대	280.0	97.0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4	전*중	
6	구산동	547-12	도	24.0	7.0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4	전*중	
7	구산동	548-1	도	448.0	51.0		김해시	
8	구산동	548-9	도	56.0	5.0	경상남도 김해시 구*동 **8	박*관(24/27)	
						경상남도 김해시 구*동 **8	이*배(1/27)	
						부산시 부산진구 야*동 16-**0	이*를(1/27)	
						경상남도 김해시 구*동 **8	이*룡(1/27)	
9	구산동	548-10	대	47.0	47.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10	구산동	548-19	도	118.0	4.0		김해시	
11	구산동	549-1	대	31.0	17.0		김해시	
12	구산동	549-2	대	23.0	23.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13	구산동	549-6	대	91.0	6.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14	구산동	549-8	대	200.0	87.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15	구산동	550-1	도	159.0	38.0	김해군 주촌면 선지리	김*돈	미등기, 토지 대장상 소유자 기재
16	구산동	550-2	묘	453.0	63.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17	구산동	1011-34	대	70.0	13.0		기획재정부	
18	구산동	1011-49	도	429.0	10.0		국토교통부	
합계		18필지		4,514.0	930.0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중로2-63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위치	지번				주소	성명	
1	구산동	579-5	임	94.0	10.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2	구산동	616	대	518.0	12.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합계		2필지		612.0	22.0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소로1-83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위치	지 번				주 소	성 명	
1	구산동	533-8	전	196.0	28.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2	구산동	533-9	전	231.0	23.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3	구산동	533-13	전	10.0	4.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4	구산동	535	답	19.0	15.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5	구산동	535-6	답	258.0	37.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6	구산동	535-8	도	50.0	13.0		국토교통부	
7	구산동	535-9	답	4.0	3.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8	구산동	632	답	9.0	9.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9	구산동	632-2	답	108.0	108.0		김해시	
10	구산동	632-3	답	33.0	29.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11	구산동	652	답	231.0	41.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12	구산동	988-10	구	465.0	16.0		기획재정부	
13	구산동	988-17	구	25.0	5.0		기획재정부	
14	구산동	988-18	구	24.0	15.0		김해시	
15	구산동	988-19	구	588.0	29.0		기획재정부	
16	구산동	1011-48	도	223.0	3.0		국토교통부	
17	구산동	산41-1	임	73.0	35.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18	구산동	산41-10	임	7.0	7.0		김해시	
19	구산동	산41-8	임	158.0	139.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합계		19필지		2,712.0	559.0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소로2-28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위치	지 번				주 소	성 명	
1	구산동	622-1	도	288.0	51.0		김해시	
2	구산동	652	답	231.0	3.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3	구산동	988-10	구	465.0	97.0		기획재정부	
합계		3필지		984.0	151.0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소로2-713호선)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위치	지 번				주 소	성 명	
1	구산동	548-1	도	448.0	137.0		김해시	
2	구산동	549-1	대	31.0	14.0		김해시	
3	구산동	549-6	대	91.0	10.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4	구산동	551-5	전	72.0	7.0		김해시	
5	구산동	1011-34	대	70.0	38.0		기획재정부	
6	구산동	1011-37	대	3.0	3.0		기획재정부	
합계		6필지		715.0	209.0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공공공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위치	지 번				주 소	성 명	
1	구산동	616	대	518.0	174.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2	구산동	619	대	220.0	184.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3	구산동	619-1	대	15.0	2.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4	구산동	622	대	487.0	173.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5	구산동	622-1	도	288.0	41.0		김해시	
6	구산동	623-1	대	338.0	338.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7	구산동	624	대	192.0	110.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8	구산동	988-10	구	465.0	53.0		기획재정부	
9	구산동	1011-40	대	12.0	12.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10	구산동	1011-41	대	18.0	10.0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저동*가, ****낸스센터)	****신탁주식 회사	
합계		10필지		2,553.0	1,097.0			



##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18-2호(2018.1.12.)로 최초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된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4. 6. 13.  
김 해 시 장

### I.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180번지 일원
- 면적 : 84,738㎡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 인근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상지(돈사부지)의 오물·악취 민원 해소
-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쾌적한 주택지 조성

####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행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45(구산동)

####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시행기간 : (당 초) 2018년 1월 12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변 경) - 1단계 : 2018년 1월 12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 2단계 : 2018년 1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1공구	2공구		
합 계	84,738	84,738	62,931	21,807	100.0	-
소 계	40,241	40,241	24,980	15,261	47.5	-
주거 용지	단독주택용지	24,980	24,980	-	29.5	점포주택 포함
	준주거시설용지	15,261	15,261	-	18.0	-
소 계	42,320	42,320	37,644	4,676	49.9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1공구	2공구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유수지(저류지)	2,010	2,010	2,010	-	2.4	-
	소공원	3,825	3,825	3,825	-	4.5	1개소
	완충녹지	10,460	10,460	10,460	-	12.3	-
	도 로	20,659	20,659	17,374	3,285	24.4	-
	보행자도로	1,736	1,736	1,736	-	2.0	-
	주차장	2,675	2,675	1,284	1,391	3.2	2개소
	수도공급설비(가압장)	255	255	255	-	0.3	1개소
	수도공급설비(배수지)	700	700	700	-	0.8	1개소
소 계		2,177	2,177	307	1,870	2.6	-
기타 시설 용지	공공용시설	1,870	1,870	-	1,870	2.2	-
	구거	307	307	307	-	0.4	-

- 변경사유 : 시설물 인계를 위한 추가공사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따른 일정 부족 및 단독주택용지 분양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조기 등기 이전 등을 위하여 1단계 우선 준공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 도로 (변경없음)

○ 총괄표

유 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7 (28)	2,926 (3,477)	22,614 (30,132)	2	209	1,952	10 (11)	1,186 (1,737)	8,866 (16,384)	15	1,531	11,796
중로	3	614	7,560	-	-	-	-	-	-	3	614	7,560
소로	15	1,808	13,099	2	209	1,952	10	1,186	8,866	3	413	2,281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	9	504	1,955	-	-	-	-	-	-	9	504	1,955
지구외 (소로)	1	551	7,518	-	-	-	1	551	7,518	-	-	-

( ) 는 지구외 도로 결정사항 포함

○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81	13.5	집산 도로	234	장유동 766-35	소로2-41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82	13.5	국지 도로	168	중로3-81	소로1-14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83	13.5	국지 도로	212	중로3-82	소로1-14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45	10	국지 도로	116	중로3-83	소로1-14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46	11	국지 도로	93	중로3-82	중로3-8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0	8	국지 도로	165	중로3-81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1	8	국지 도로	163	중로3-81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2	8	국지 도로	160	중로3-81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3	8	국지 도로	114	소로2-412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4	8	국지 도로	117	소로2-412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5	8	국지 도로	54	중로3-81	소로3-36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6	8	국지 도로	64	중로3-81	산30-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7	8	국지 도로	94	소로2-416	장유동 산40-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8	8	국지 도로	80	중로3-83	장유동 149-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9	8	국지 도로	175	중로3-83	장유동 135-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20	8 ~21	국지 도로	551	장유교차로	소로2-418	일반도로	-	-	지구외
기정	소로	3	366	6	국지 도로	317	소로2-414	소로1-14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67	6	국지 도로	76	소로2-416	소로2-41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68	6	국지 도로	20	중로3-81	산38-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69	6	특수 도로	41	소로2-410	소로2-41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0	6	특수 도로	41	소로2-411	소로2-41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1	4	특수 도로	14	소로1-146	장유동 152-6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2	4	특수 도로	84	소로3-366	장유동 산25-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3	2	특수 도로	140	소로2-412	소로2-414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4	8	특수 도로	18	소로2-415	소로3-367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5	4	특수 도로	31	중로3-81	소로2-417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6	4	특수 도로	100	소로2-418	장유동 175-5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97	3.5	특수 도로	35	소로3-373	장유동 산30	보행자 전용도로	-	-	-

2)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64	주차장	장유동 176 일원	1,391	-	1,391	-
기정	3-65	주차장	장유동 산30-4 일원	1,284	-	1,284	-

3) 공 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90	소공원	장유동 177-3 일원	3,825	-	3,825	-

4) 녹 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79	녹 지	장유동 152-5일원	10,460	-	10,460	-

5)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8	가압장	장유동 766-18일원	255	-	255	-
기정	3-9	배수지	장유동 산 31-4번지 일원	700	-	700	-

6) 유수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6	저류지	장유동 175-5일원	2,010	-	2,010	-

7) 공공용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A	공공용시설	장유동 152-2일원	1,870	-	1,870	-

8) 구거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A	구거	장유동 산30-4일원	307	-	307	-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없음)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붙임1] (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지구외 외 기반시설		위 치	설치계획	비고
도 로	소로2류	김해시 장유동 산16-8번지 일원	연장:551m, 폭원:8~21m, 면적:7,518㎡	-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2018년 1월 12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김해시 도시개발과 (전화 : 055-330-361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함.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김해시 장유동 180번지 일원	84,738	-	84,738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34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해시 장유동 180번지 일원	84,738	-	84,738	-

## II.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인근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상지(돈사부지)의 오물·악취 민원 해소
-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쾌적한 주택지 조성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180번지 일원
- 면적 : 84,738㎡

### 4.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45(구산동)

### 5. 시행기간(변경)

- (당 초) 2018년 1월 12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 (1공구) 2018년 1월 12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 (2공구) 2018년 1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6. 시행방식(변경없음)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7.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 [붙임2](변경없음)

###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해당없음

###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없음

붙임 1. 토지명세(변경) 1부.(변경)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1부.(변경없음)

## III. 지형도면 고시(변경)

## IV. 관련도면(변경)

**【붙임1】 토지명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별지 제7조의2서식]) (변경)**

□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토지소유자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공구	2공구		
계				87,079	84,738	62,931	21,807	-	
1	장유동	134-9	도	1	1	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	장유동	134-10	과	249	249	249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	장유동	135-1	대	340	340	340		김해시도시개발공사	
4	장유동	135-2	임	407	407	40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5	장유동	135-5	도	19	19	19		김해시도시개발공사	
6	장유동	148	전	293	293	217	76	김해시도시개발공사	
7	장유동	148-1	임	1,593	1,593	83	1,510	김해시도시개발공사	
8	장유동	148-2	임	444	444		444	김해시도시개발공사	
9	장유동	148-3	임	998	998	4	994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0	장유동	149-1	답	1,141	1,141	154	98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1	장유동	149-2	임	165	165		16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2	장유동	150-4	장	54	54	37	1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3	장유동	150-5	장	190	190	50	140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5	장유동	152-2	과	6,072	6,072	1,315	4,75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6	장유동	152-5	도	173	173	26	14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7	장유동	152-10	과	1,764	1,764	1,319	44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8	장유동	175	대	660	660	126	534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9	장유동	175-1	도	205	205		20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	장유동	175-2	답	340	340		340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1	장유동	175-5	창	1,135	1,135	158	97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2	장유동	176	답	456	456		456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3	장유동	177	답	698	698		69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4	장유동	177-3	목	15,732	15,732	15,117	61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5	장유동	177-4	도	628	628	197	43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6	장유동	177-5	임	3,300	3,300	874	2,426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7	장유동	177-6	임	430	430	430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8	장유동	177-7	임	198	198		19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9	장유동	177-11	임	2,406	2,406	712	1,694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0	장유동	178-1	답	19	19	17	2	국토교통부	178-1번지 에서 분할
		178-2	답	61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공구	2공구		
31	장유동	179	답	367	367	36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2	장유동	180	답	1,055	1,055	421	634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3	장유동	181	답	1,352	1,352	1,352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4	장유동	182-1	임	332	332	332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5	장유동	183	답	53	53	53		김해시도시개발공사	
36	장유동	766-15	구	81	81	21	60	농림축산식품부	766-15번지에서 분할
		766-54	구	13	13	4	9	김해시도시개발공사	766-15번지에서 분할
37	장유동	766-17	구	411	411		411	농림축산식품부	766-17번지에서 분할
		766-55	구	33	33		33	농림축산식품부	766-17번지에서 분할
		766-56	구	293	293	34	259	농림축산식품부	766-17번지에서 분할
		766-57	구	28	28		2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766-17번지에서 분할
38	장유동	766-36	구	542	542	542		농림축산식품부	766-36번지에서 분할
		766-58	구	32	32	32		농림축산식품부	766-36번지에서 분할
		766-59	구	79	79	79		김해시도시개발공사	766-36번지에서 분할
39	장유동	767-8	도	33	33	33		김해시도시개발공사	
40	장유동	767-9	도	7	7	7		김해시도시개발공사	
41	장유동	767-10	도	4	4	4		김해시도시개발공사	
42	장유동	산25-8	임	1,311	1,311	1,31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43	장유동	산27	임	793	793	788	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44	장유동	산30-4	임	26,276	26,276	24,166	2,110	김해시도시개발공사	
45	장유동	산31-4	임	8,756	8,756	8,756		김해시도시개발공사	
46	장유동	산38-3	임	73	73	73		김해시도시개발공사	
47	장유동	산40-5	임	1,458	1,458	1,45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48	장유동	산40-6	임	14	14	14		김해시도시개발공사	
49	장유동	산40-7	임	1,058	1,058	1,05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50	장유동	산40-8	임	136	136	136		국토교통부	
51	장유동	산40-9	임	38	38	38		국토교통부	



【붙임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총괄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63,329,091.0	-	463,329,091.0	100.0	-
주거 지역	소 계	36,384,056.5	-	36,384,056.5	7.8	-
	제2종전용주거지역	71,538.0	-	71,538.0	0.1	-
	제1종일반주거지역	11,709,871.0	-	11,709,871.0	2.5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465,483.5	-	15,465,483.5	3.3	-
	제3종일반주거지역	6,737,179.2	-	6,737,179.2	1.4	-
	준주거지역	2,399,984.8	-	2,399,984.8	0.5	-
상업 지역	소 계	4,256,201.1	-	4,256,201.1	1.0	-
	중심상업지역	365,880.0	-	365,880.0	0.1	-
	일반상업지역	3,425,132.2	-	3,425,132.2	0.7	-
	근린상업지역	216,514.9	-	216,514.9	0.1	-
	유통상업지역	248,674.0	-	248,674.0	0.1	-
공업 지역	소 계	17,344,981.2	-	17,344,981.2	3.8	-
	일반공업지역	13,525,802.2	-	13,525,802.2	2.9	-
	준공업지역	4,011,897.0	-	4,011,897.0	0.9	-
녹지 지역	소 계	208,827,609.2	-	208,827,609.2	45.1	-
	보전녹지지역	143,853.0	-	143,853.0	0.1	-
	생산녹지지역	7,278,254.2	-	7,278,254.2	1.7	-
	자연녹지지역	201,405,502.0	-	201,405,502.0	43.3	-
관리 지역	소 계	101,158,219.0	-	101,158,219.0	21.8	-
	관리지역	3,713,752.0	-	3,713,752.0	0.8	-
	보전관리지역	42,292,002.0	-	42,292,002.0	9.1	-
	생산관리지역	17,566,360.0	-	17,566,360.0	3.8	-
	계획관리지역	37,586,105.0	-	37,586,105.0	8.1	-
농림지역		94,991,258.0	-	94,991,258.0	20.4	-
도시지역(미세분)		174,048.0	-	174,048.0	0.1	-

※ 기정은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334호, 2019.12.13.) 반영 기준임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4,738	-	84,738	100.0	-
주거 지역	소 계	84,738	-	84,738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52,114	-	52,114	61.5	-
	준주거지역	32,624	-	32,624	38.5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총괄표

유 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 <sup>2</sup> )
합계	27 (28)	2,926 (3,477)	22,614 (30,132)	2	209	1,952	10 (11)	1,186 (1,737)	8,866 (16,384)	15	1,531	11,796
중로	3	614	7,560	-	-	-	-	-	-	3	614	7,560
소로	15	1,808	13,099	2	209	1,952	10	1,186	8,866	3	413	2,281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	9	504	1,955	-	-	-	-	-	-	9	504	1,955
지구외 (소로)	1	551	7,518	-	-	-	1	551	7,518	-	-	-

( ) 는 지구외 도로 결정사항 포함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81	13.5	집산 도로	234	장유동 766-35	소로2-41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82	13.5	국지 도로	168	중로3-81	소로1-14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83	13.5	국지 도로	212	중로3-82	소로1-14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45	10	국지 도로	116	중로3-83	소로1-14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46	11	국지 도로	93	중로3-82	중로3-8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0	8	국지 도로	165	중로3-81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1	8	국지 도로	163	중로3-81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2	8	국지 도로	160	중로3-81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3	8	국지 도로	114	소로2-412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4	8	국지 도로	117	소로2-412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5	8	국지 도로	54	중로3-81	소로3-36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6	8	국지 도로	64	중로3-81	산30-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7	8	국지 도로	94	소로2-416	장유동 산40-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8	8	국지 도로	80	중로3-83	장유동 149-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9	8	국지 도로	175	중로3-83	장유동 135-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20	8 ~21	국지 도로	551	장유교차로	소로2-418	일반도로	-	-	지구 외
기정	소로	3	366	6	국지 도로	317	소로2-414	소로1-14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67	6	국지 도로	76	소로2-416	소로2-41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68	6	국지 도로	20	중로3-81	산38-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69	6	특수 도로	41	소로2-410	소로2-41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0	6	특수 도로	41	소로2-411	소로2-41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1	4	특수 도로	14	소로1-146	장유동 152-6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2	4	특수 도로	84	소로3-366	장유동 산25-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3	2	특수 도로	140	소로2-412	소로2-414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4	8	특수 도로	18	소로2-415	소로3-367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5	4	특수 도로	31	중로3-81	소로2-417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6	4	특수 도로	100	소로2-418	장유동 175-5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97	3.5	특수 도로	35	소로3-373	장유동 산30	보행자 전용도로	-	-	-

**(2)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64	주차장	장유동 176번지 일원	1,391	-	1,391	-	-
기정	3-65	주차장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1,284	-	1,284	-	-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1)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90	소공원	소공원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825	-	3,825	-	-

**(2)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79	녹지	완충녹지	장유동 152-1번지 일원	10,460	-	10,460	-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8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장유동 766-36번지 일원	255	-	255	-	-
기정	3-9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장유동 산 31-4번지 일원	700	-	700	-	-

**라. 방재시설 (변경없음)**

**(1) 우수지**

■ 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6	우수지	저류 시설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2,010	-	2,010	-	-

마. 공원조성계획 (변경없음)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90	소공원	소공원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825	-	3,825	-	-

(2)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 총괄표

구분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3,825.0	-	3,825.0	-
시설면적계		763.0	-	763.0	시설률 : 19.9%
건축 면적	바닥면적	-	-	-	-
	연면적	-	-	-	-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3,825.0	-	3,825.0	-
도로및광장		503.5	-	503.5	-
휴양시설		209.2	-	209.2	-
운동시설		50.3	-	50.3	-
녹지		3,062.0	-	3,062.0	-

(3) 세부시설조서

■ 도로 및 광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부지면적 (m <sup>2</sup> )	건축규모(m <sup>2</sup> )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503.5	-	-	-	-
기정	1	도로	-	406.3	-	-	-	-
기정	2-1	진입광장-1	-	31.2	-	-	-	-
기정	2-2	진입광장-2	-	66.0	-	-	-	-

■ 휴양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부지면적 (m <sup>2</sup> )	건축규모(m <sup>2</sup> )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209.2	-	-	-	-
기정	3-1	휴게쉼터-1	-	36.3	-	-	-	-
기정	3-2	휴게쉼터-2	-	15.2	-	-	-	-
기정	3-3	휴게쉼터-3	-	35.9	-	-	-	-
기정	4-1	피크닉장-1	-	63.5	-	-	-	-
기정	4-2	피크닉장-2	-	58.3	-	-	-	-

■ 운동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부지면적 (m <sup>2</sup> )	건축규모(m <sup>2</sup> )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계			50.3	-	-	-	-
기정	5-1	노천헬스장	-	50.3	-	-	-	-

■ 녹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시설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3,062.0	-	-	-	
기정	6	녹지	전지역	3,062.0	-	-	-	

(4) 도로조서 총괄표

구 분		합 계		소 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합 계	기정	246.9	406.3	246.9	406.3
소로	3류	기정	246.9	246.9	406.3

(5) 세부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 형태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 계					246.9	406.3			
기정	소로	3	1	0.8~2.25	연결로	15.5	27.0	진입광장-1	소로3-2	
기정			2	1.5	연결로	104.2	156.7	진입광장-1	소로3-3	
기정			3	2.5	진입로	24.6	62.4	복서측 출입부	남동측 출입부	
기정			4	1.5	연결로	50.5	75.8	소로3-3	소로3-7	
기정			5	1.0	연결로	13.1	13.1	휴게쉼터-2	휴게쉼터-3	
기정			6	1.0	연결로	8.3	8.3	휴게쉼터-3	소로3-4	
기정			7	1.15~3.6	진입로	30.7	63.0	휴게쉼터-2	소로3-6	

②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34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해시 장유동 180번지 일원	84,738	-	84,738	김해시 고시 제2018-2호 (18. 1.12)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1) 도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7 (28)	2,926 (3,477)	22,614 (30,132)	2	209	1,952	10 (11)	1,186 (1,737)	8,866 (16,384)	15	1,531	11,796
중로	3	614	7,560	-	-	-	-	-	-	3	614	7,560
소로	15	1,808	13,099	2	209	1,952	10	1,186	8,866	3	413	2,281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	9	504	1,955	-	-	-	-	-	-	9	504	1,955
지구외 (소로)	1	551	7,518	-	-	-	1	551	7,518	-	-	-

( ) 는 지구외 도로 결정사항 포함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81	13.5	집산 도로	234	장유동 766-35	소로2-412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82	13.5	국지 도로	168	중로3-81	소로1-146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83	13.5	국지 도로	212	중로3-82	소로1-14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45	10	국지 도로	116	중로3-83	소로1-14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46	11	국지 도로	93	중로3-82	중로3-8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0	8	국지 도로	165	중로3-81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1	8	국지 도로	163	중로3-81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2	8	국지 도로	160	중로3-81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3	8	국지 도로	114	소로2-412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4	8	국지 도로	117	소로2-412	소로3-36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5	8	국지 도로	54	중로3-81	소로3-367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 (m)								
기정	소로	2	416	8	국지 도로	64	중로3-81	산30-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7	8	국지 도로	94	소로2-416	장유동 산40-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8	8	국지 도로	80	중로3-83	장유동 149-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19	8	국지 도로	175	중로3-83	장유동 135-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420	8 ~21	국지 도로	551	장유교차로	소로2-418	일반도로	-	-	지구 외
기정	소로	3	366	6	국지 도로	317	소로2-414	소로1-146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67	6	국지 도로	76	소로2-416	소로2-41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68	6	국지 도로	20	중로3-81	산38-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69	6	특수 도로	41	소로2-410	소로2-411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0	6	특수 도로	41	소로2-411	소로2-412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1	4	특수 도로	14	소로1-146	장유동 152-6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2	4	특수 도로	84	소로3-366	장유동 산25-3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3	2	특수 도로	140	소로2-412	소로2-414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4	8	특수 도로	18	소로2-415	소로3-367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5	4	특수 도로	31	중로3-81	소로2-417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76	4	특수 도로	100	소로2-418	장유동 175-5	보행자 전용도로	-	-	-
기정	소로	3	397	3.5	특수 도로	35	소로3-373	장유동 산30	보행자 전용도로	-	-	-

(2)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64	주차장	장유동 176번지 일원	1,391	-	1,391	-	-
기정	3-65	주차장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1,284	-	1,284	-	-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1)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90	소공원	소공원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825	-	3,825	-	-



(2)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79	녹지	완충녹지	장유동 152-1번지 일원	10,460	-	10,460	-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8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장유동 766-36번지 일원	255	-	255	-	-
기정	3-9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장유동 산 31-4번지 일원	700	-	700	-	-

라. 방재시설 (변경없음)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6	유수지	저류 시설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2,010	-	2,010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합 계		26,264	-	-	26,264	주차장 :1,284m <sup>2</sup>
-	A1	2,534	1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17	
			2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17	
			3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17	
			4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25	
			5	장유동 산25-8번지 일원	307	
			6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17	
			7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17	
			8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17	
-	A2	2,449	1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07	
			2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07	
			3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07	
			4	장유동 산25-8번지 일원	313	
			5	장유동 산25-8번지 일원	300	
			6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0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7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05	
			8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05	
A3	2,397	1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298		
		2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01		
		3	장유동 181번지 일원	301		
		4	장유동 177-3번지 일원	297		
		5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00		
		6	장유동 181번지 일원	301		
		7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01		
		8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298		
A4	2,413	1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298		
		2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03		
		3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03		
		4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00		
		5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03		
		6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04		
		7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04		
		8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298		
-	A5	4,611	1	장유동 177-3번지 일원	422	-
			2	장유동 177-3번지 일원	410	-
			3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91	-
			4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372	-
			5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501	-
			6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450	-
			7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414	-
			8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414	-
			9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414	-
			10	장유동 177-3번지 일원	414	-
			11	장유동 177-3번지 일원	409	-
-	A6	4,455	1	장유동 177-3번지 일원	368	-
			2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373	-
			3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373	-
			4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373	-
			5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373	-
			6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368	-
			7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68	-
			8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73	-
			9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373	-
			10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373	-
			11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373	-
			12	장유동 산31-4번지 일원	367	-
	A7	2,168	1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438	-
			2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432	-
			3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432	-
			4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433	-
			5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433	-
-	A8	2,794	1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74	-
			2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81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3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81	-
			4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74	-
			5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1,284	주차장3-65
-	A9	1,293	1	장유동 766-36번지 일원	330	-
			2	장유동 179번지 일원	321	-
			3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21	-
			4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321	-
-	A10	1,150	1	장유동 산40-5번지 일원	283	-
			2	장유동 182-1번지 일원	290	-
			3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290	-
			4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287	-

나. 준주거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합계		18,522	-	-	18,522	주차장 : 1,391m <sup>2</sup> 공공용시설용지 : 1,870m <sup>2</sup>
-	B1	5,925	1	장유동 148-1번지 일원	1,870	공공용시설용지
			2	장유동 152-10번지 일원	785	-
			3	장유동 149-2번지 일원	690	-
			4	장유동 152-2번지 일원	585	-
			5	장유동 152-2번지 일원	619	-
			6	장유동 149-2번지 일원	642	-
			7	장유동 148-3번지 일원	734	-
-	B2	4,049	1	장유동 175-5번지 일원	1,301	-
			2	장유동 175번지 일원	1,357	-
			3	장유동 152-2번지 일원	1,391	주차장3-64
-	B3	3,554	1	장유동 177-11번지 일원	699	-
			2	장유동 177-11번지 일원	718	-
			3	장유동 177-11번지 일원	718	-
			4	장유동 152-2번지 일원	718	-
			5	장유동 152-2번지 일원	701	-
-	B4	3,396	1	장유동 177-5번지 일원	674	-
			2	장유동 177-5번지 일원	692	-
			3	장유동 177-5번지 일원	692	-
			4	장유동 177-5번지 일원	692	-
			5	장유동 177-3번지 일원	646	-
-	B5	1,598	1	장유동 180번지 일원	799	-
			2	장유동 산30-4번지 일원	799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점포주택 포함)(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A3 A4 A8 A9 A10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li> <li>2)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li> </ol> </li> <li>※ 점포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 한하여 적용. 바닥면적 총 연면적 40% 초과 할 수 없음</li> <li>(단,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층 이하(필로티는 층수에서 제외)</li> </ul>	
	배 치	-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 1m(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li> </ul>	

나. 단독주택용지(전용)(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5 A6 A7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li> </ol> </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층 이하(필로티는 층수에서 제외)</li> </ul>	
	배 치	-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 1m(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li> </ul>	

**다.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B2 B3 B4 B5	용 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기타사항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라. 공공용시설용지(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1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공시설</li> <li>1)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시설</li> <li>2) 문화 및 집회시설</li> <li>3) 의료시설</li> <li>4)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li> <li>5) 노유자시설</li> <li>6) 수련시설</li> <li>7) 운동시설</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고)	
	기타사항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다. 주차장 용지(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8-5, B2-3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 3-64 (준주거시설용지)	주차장 3-65 (단독주택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및 부대시설</li> <li>※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용도외의 허용용도</li> <li>「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li> <li>판매시설(상점에 한함)</li> <li>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에 한함)</li> </ol> </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00% 이하</li> </ul>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 1m</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li> </ul>		

5. 기타사항에 관한 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로3-81호선 기점으로부터 100m 구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진출입 불허구간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세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li> </ul>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 공 고

김해시 공인조례 제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10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김 해 시




1.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일자 : 2024. 6. 13.
2. 폐기 공인 폐기일자 : 2024. 6. 13.
3. 재등록 공인내역 : 1개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 체	등 록 사 유	관리부서
민원사무 김해시장 부동인용 전용	2.1 *2.1	흑인조	훈민정음체	서체변경에 따른 재등록 (전서체 → 훈민정음체)	북부동

4. 폐기 공인내역 : 1개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 체	등 록 사 유	관리부서
민원사무 김해시장 부동인용 전용	2.1 *2.1	흑인조	전서체	서체변경에 따른 재등록 (전서체 → 훈민정음체)	북부동

5. 재등록 인영부 : 1개

구 분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체	인 영
재 등록	민원사 무 김해동 장 복전 인 용	2.1 *2.1	흑인조	훈민정음체	

6. 폐기 인영부 : 1개

구 분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체	인 영
폐 기	민원사 무 김해동 장 복전 인 용	2.1 *2.1	흑인조	전서체	